

SMCS 41 85 01 : 2018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2018년 05월 03일 개정

<http://www.kcsc.re.kr>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시방서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와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중심으로 KCS 41 85 01 등의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전문시방서 (분야 및 코드)	주요내용	제·개정 (년.월)
건축분야	• 건축물공사 관련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2000.04)
건축분야	• 부분 개정	개정 (2002.06)
건축분야	• 부분 개정	개정 (2004.11)
건축분야	• 부분 개정	개정 (2006.09)
건축분야	• 부분 개정	개정 (2011.12)
SMCS 41 85 01 : 2018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	개정 (2018.05)

제 정 : 2000 년 04 월 26 일

개 정 : 2018 년 05 월 03 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관련단체 (작성기관) : 서울특별시 (주) 유신, (주) 조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일반사항	1
1.5 제출물	1
1.6 품질확보	1
1.7 해체공사계획	4
2. 자재	4
3. 시공	4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적용 범위는 KCS 41 85 01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관련 법규는 KCS 41 85 01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관련 기준은 KCS 41 85 01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SMCS 10 10 30 환경관리
-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41 85 01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제출물은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은 KCS 41 85 01 (1.6.1)에 따른다.

1.6.2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①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가. 공사 시 소음원 대책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공사의 가능한 작업시간을 주간시간대(08:00 ~ 18:00)로 제한(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규정)

(나) 공사용 차량의 운행속도(20 km/Hr 이하)를 제한하고 경적의 사용금지

(다) 공정별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발생 최대 억제

(라) 공사장비 및 차량에 소음기를 부착하여 발생소음 억제

표 1.6-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Leq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조 석 (05:00~07:00, 18:00~22:00)	주 간 (07:00~ 18:00)	심 야 (22:00~ 05:00)
	소 음 원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55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공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동 일 건 물 기 타	45이하	50이하	40이하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 외 설 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공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동 일 건 물 기 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진동방지대책

① 진동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 시설 등 3가지를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진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타기 등 진동을 많이 배출하는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장은 저 진동 발생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시간의 조정·방진시설의 설치 등

진동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표 1.6-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간별 대상지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0 이하	65 이하

(3) 분진방지대책

①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을 초과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으로 피해발생 시 즉시 대책을 수립 조치한다.

② 분진 저감방안

가.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 실시

(나)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즉시제거 및 작업장 주위에 고정식 및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 공사 시 먼지, 재, 비산 방지

(다) 풍속 8 m/sec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 할 것

(라)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 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세륜, 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한다.

다. 작업장 내에서의 차량운행 속도 제한(5 ~ 10 km/hr)과 적재량 조정 및 적재함 덮개 설치를 하여야 한다

(4)수질오염 방지대책

① 공사장 말단부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② 레미콘 차량 등의 세륜·세차 실시

③ 침사지 설치·운영 시 침전물의 주기적인 준설 및 운영 철저

1.7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해체공사계획은 KCS 41 85 01 (1.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시공은 KCS 41 85 01 (3. 시공)에 따른다.

집필위원	분야	성명	소속
	총괄	장영일	(주)유신
	건축	이상준	(주)조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	이범선	(주)조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	이온나래	(주)조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자문위원	분야	성명	소속
	건축구조	김정선	(주)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
	건축시공	장덕배	동양미래대학교

건설기준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건축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	임남기	동명대학교
	건축	최광호	남서울대학교
	건축	하영철	금오공과대학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명	소속
	김 영 근	(주) 건 화
	김 영 환	한국시설안전공단
	서 경 숙	(주) 청우이엔지
	성 배 경	한국건설교통기술협회
	이 태 옥	(주) 평화엔지니어링
	조 의 섭	동부엔지니어링 (주)
	최 창 식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명	소속	직책
	김 홍 길	기술심사담당관	과 장
	도 태 환	기술심사담당관	건축심사팀장
	배 진 성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조 성 산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강 한 석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41 85 01 : 2018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

2018년 05월 03일 발행

소관부서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관련단체 서울특별시

(작성기관) (주)유 신
062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길 8 (역삼동)
☎ 02-6202-0114 E-mail : webmaster@yooshin.com
<http://www.yooshin.com>

(주) 조우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057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19 (가락동)
☎ 02-406-0332 E-mail : jowooeng@daum.net

서울특별시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120
<http://www.seoul.go.kr>